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14
----------	-----

2013년 7월1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8월 2일 남재경 의원 외 15명
- 나. 회부일자 : 2011년 8월 5일
- 다. 상정일자 : 제2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 12월 2일(보류)
- 라. 재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 7월 5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남재경 의원)

가. 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여 그 뜻을 기리어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 운영 방법 등을 새로이 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1)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함(안 제2조).

- 2)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 열람케 함(안 제4조).
- 3)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의 전당”에 명단 부착 보존, 특정 상징물에 성명 각인,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문화술·복지후생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5조).
- 4)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와 명예의 전당 등 기탁자에 대한 예우 여부 및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함(안 제7조 내지 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2014년 회계 연도부터 계상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주요 내용 및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서울시에 자발적 기탁금품 (기부금 또는 현물)을 기탁한 자에 대하여 기부증서 발급, 기부자 명단 작성, 영구보존 및 열람하도록 비치, 특정 상징물에 성명 각인, 시 주관 행사 초청, 문화예술, 복지 후생시설의 이용 편의 제공, 명예의 전당 설치 등을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예우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임.
- 현재,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 등 산하기관이 연간 약 200여억원의 기부를 받고 있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임.

※ 최근 5년간 서울시 기부금 현황(남재경 의원 보도자료)

- 2007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기관·기업체·개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액(협찬/기탁포함)은 총 약 1,000여 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음.

① 산하기관 - 약 362억 5천8백만 원

(단위 : 천원)

	문화재단 (순수기부유치)	문화재단 (조건부기부)	문화재단 (협찬)	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시립교향악단	기타
2007년	7,106,789	41,152	1,350,000	1,813,330	157,112	59,000	
2008년	7,002,477	88,353	1,327,143	2,052,500	158,033	47,500	
2009년	10,005,498	307,700	650,000	295,500	1,636,000	135,940	
2010년	6,939	225,144	394,228	262,800	1,420	95,000	225,100
2011년	5,000	50,851	758,317				
합계	24,126,705	713,201	4,479,688	4,424,130	1,952,565	337,440	225,100

② 시장에 자발적 기탁 - 약 601억 1천4백만 원

2007년 : 67건 / 11,179,514천 원 2008년 : 92건 / 10,172,124천 원
 2009년 : 143건 / 22,224,780천 원 2010년 : 130건 / 11,536,197천 원
 2011년 : 55건 / 5,028,770천 원

- 최근 기부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앙 정부도 과거 규제 위주의 기부금 정책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자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서울시가 따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제도 마련을 통해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¹⁾
- 다만 현행 「기부금품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책무, 나눔의 날 지정, 모범 기부자 포상 등을 신설하는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국회에 11월 18일 제출하였으며, 법 개정 추이를 살펴 개정 내용을 함께 반영할 필요성에 대하여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상위법령 개정 방향(기부금품 모집 규제 → 활성화) >

- 행정안전부 「기부금품법」 개정안 제출(2011. 11. 18)
 - 제명변경 :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 제1조 목적 수정 : 전한 기부를 장려하고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사회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책무 신설
 - 「나눔의 날」(매년 12월 5일) 법정 기념일 제정
 - 모범 기부자 포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는 11월중 개정안을 확정 후 국회 제출 예정으로 국회 심의 후 확정된 법 개정안 반영 필요
- ※ 국회 심사기간 고려 필요

1) 남재경의원은 발의와 관련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대가가 아닌 서울시가 당연히 표해야 할 감사와 존경의 표시이며, 기부에 대한 대가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문화를 더욱 확산하자는 취지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면, 기부자의 자긍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부가 받는 사람에게도 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부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였다(서울 시의회 보도자료 2011. 8. 3)

나. 세부 내용 검토

1)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제2조)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안 제1조), 그 적용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과 「기부금품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에게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로 한정(안 제2조)하고 있음.
- 법률 자문 결과 본 조례안은 침익적 성격의 조례가 아닌 수익적 성격의 조례라는 점,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2개 법에 의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사항이라는 점, 각 법률에 의한 기부자 각각에 대해 어떠한 예우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조례안의 기부자 예우 등 우대내용이 간접적·우회적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부금품법」과의 상충성 여부

법무법인 영진 (최경원 변호사)	법무법인 이인 (손계룡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김정범 변호사)
<p>○ 문제 없음</p> <p>- 본 조례의 취지는 관련 법령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장려하는 차원으로 「기부금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낮음.</p>	<p>○ 문제 없음</p> <p>-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라는 점과 본 조례안의 예우 등 우대사항이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은 예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부금품법」을 위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p>	<p>○ 문제 없음</p> <p>-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하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조문상으로는 반대급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p>

- 다만, 기부금품 모집의 종류 및 관련 법령이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²⁾ 이 중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기부금품과 서울시에 기탁하는 자발적인 기부금품만 적용하기에는 일반적인 기부의 범위와 규모에 비해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 조례안이 서울시민의 기부문화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목적임을 감안할 때, 그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확대 또는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2조의 적용범위의 하나인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기부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위한 기부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경우에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정법인·단체에 기탁하는 사항이고,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재 서울시에서 운용을 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 제2조에서 근거 법률로 인용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시장에게 기탁하는 기부금품은 적용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은 적용범위에서 삭제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상 기부를 별도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기부금품의 모집은 ①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제사업, ② 천재지변 등 재난 구호사업, ③ 불우 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④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공익사업 등에 대한 기부 등 다양하며, 「기부금품법」 적용 제외 법률에 의한 기부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2) 기부자 예우(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본 조례안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 명의를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성명 각인, 서울특별시 소유 시설물 이용, 건물 및 공간명칭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안 제3조), 안 제4조에서 기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안제 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우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기부자 명부 관리(안 제4조)
: ‘기부증서’발급,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 열람
- 기부자 예우(안 제5조) :
 - ① 특정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 ② 특정 상징물에 성명 각인
 - ③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 ④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 ⑤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 ⑥ 문화예술·복지후생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다른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무료로 편의 제공)
 - ⑦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³⁾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 직접적인 행정목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기부금을 명목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각종 사업에 대한 준조세적 성금모집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임.

3) 도의회 의원이 도내 행사를 개최하면서 지방공사 등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금품을 받고 행사안내용 전단지에 금품제공자의 성명 내지 단체명을 게재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위법을 선고 함(대법원 2007.10.25. 선고2005도1991판결)

- 현행 「기부금품법」 상 본 조례안에 나열된 각종 기부자 예우 및 우대사항이 자칫 간접적·우회적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본 조례의 취지가 관련 법령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장려하는 차원으로 본 조례안의 예우 등 우대사항이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은 예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우사항이 기부금품의 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조례안의 기부자 예우 등 우대내용이 간접적·우회적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부금품법」과의 상충성 여부

법무법인 영진 (최경원 변호사)	법무법인 이인 (손계룡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김정범 변호사)
○ 문제 없음 - 본 조례의 취지는 관련 법령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장려하는 차원으로 「기부금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낮음.	○ 문제 없음 -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기부문화를 확산하려 한다는 점과 본 조례안의 예우 등 우대사항이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은 예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부금품법」을 위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음.	○ 문제 없음 - 반대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 동기 등을 포함하여 일반인의 통념에 따라 객관적,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조문상으로는 반대급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다만, 안 제6조제2항에서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문화예술시설, 복지후생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무료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무료로 편의를 제공하는 문화예술시설 및 복지후생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라는 점과 기부금액의 규모(고액 또는 소액)를 고려하지 않고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 모두에 대해 무료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 10만원 미만의 소액 기부의 경우에도 문화예술시설 및 복지후생시설을 기간에 상관없이 무료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무료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 적용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한편, 입법기술적으로 조례안 제5조에는 ‘6호’가 누락되어 있는바, 안 ‘7호’와 ‘8호’는 각각 ‘6호’와 ‘7호’로 보완하고, 안 제6조제2항은 안 제5조제7호와의 조문내용상 중복성 여부 검토와 조문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본 조례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여부 및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회의(안 제9조), 의견청취(안 제10조), 수당(안 제11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기부금품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준용하여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것임.
- ※ 현재 서울시는 「기부금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으며, 본 조례안은 예우 등에 관한 심의 기능을 확대하여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기부심사위원회 개최실적 및 심사현황 〉

구 분	위원회 개최 (회)	지정기탁금품 접수 및 승인 건수		
		접수요청(건)	승인(건)	금 액(원)
계	21	409	409	40,743,404,180
2009년	8	143	143	21,552,384,680
2010년	8	130	130	11,431,627,400
2011년 (기준일자 : 11.1.)	5	136	136	7,759,392,10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기부금품법」 제3조제4호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의 기부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기부심사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기부를 심의하는 것이 가능한지(상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에 대한 적용 여부),
- 「기부금품법」 제5조제3항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가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명예의 전당 등 기탁자에 대한 예우 여부 및 범위·방법 등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지,

-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위원은 공무원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시행령과 달리 본 조례안과 같이 시의원 2명을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법률 자문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법무법인 영진 (최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이인 (손계룡 변호사)	법무법인 민우 (김정범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없음 - 「문화예술진흥법」 상 기부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을 여지가 없으므로 예우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한다고 볼 때 <u>법 위반 소지는 적음.</u> - 「기부금품법」 상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u>위법하다 할 수 없음.</u> - 시행령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u>굳이 조례에 시의원 2명을 특정하여 규정하지 말고 위촉시 시의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확대는 문제없음. 다만, 시의원 위촉은 법령 위반 사항임. - 「문화예술진흥법」 상 기부금품 접수 관련 사전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것은 <u>문제가 없음.</u> - 조례안의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법에 따른 심사외에 부가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u>기부금품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님.</u> - 시행령에서는 위원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공무원 4명과, 시의원 2명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u>상위법령 위반인 동시에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법상 기부 접수여부 심의 부적정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기부금품 접수여부를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u>적절하지 않음.</u> -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조례로써 규율 가능</u> -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이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시의원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u>시의원 위촉 가능</u>

- 또한 안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 위원회의 복합적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제7조제1항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와 제5조제8호에 따른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와 같이 위원회의 권한 사항을 시행령의 권한사항과 함께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기부심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 및 수정함.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14
----------	-----------

제안년월일 : 2013년 7월12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기부심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시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일부 규정을 보완 및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본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제5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제3조제2호부터 10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서울특별시장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함(안 제2조).
- 나.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하고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함(안 제4조).
- 다.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명예의 전당”에 명단 부착 보존,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5조).
- 라.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여부와 명예의 전당 등 기탁자에 대한 예우 여부 및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함(안 제7조 내지 11조).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 『문화예술진흥법』 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로 한다.

안 제3조 중 “성명 각인, 서울특별시 소유 시설물 이용,”을 삭제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복지후생시설”을 “복지시설”로 하며, 제3호부터 제5호를 제2호부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8호를 제5호부터 제6호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 ① 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와 제5조제6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상징물 설치의 장소 및 규모, 종류, 기간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기부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 ③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편

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안 제9조 중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를 “접수여부”로 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을 “2014년 1월 1일”로 하며, 안 부칙 제 2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제정안과 같음)</p>
<p>제2조(적용범위)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에----- ----- ----- ----- ----- ----- -----</p>
<p>제3조(정의)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 대해 시장 명의를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성명 각인, 서울특별시 소유 시설물 이용, 건물 및 공간명칭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정의) ----- ----- ----- 감사패 증정 건물 및 ----- ----- -----</p>
<p>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 ----- ----- 할 수 있다.</p>
<p>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p>	<p>②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한다.</p> <p>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특정 상징물에 성명 각인 3.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4.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5. 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7.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후생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8.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p>제6조(명예의 전당 등의 설치)</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① 기부자 명예의 전당, 상징물 설치의 장소 및 규모, 종류, 기간 등 예우에 관한</p>	<p>제5조(기부자 예우) (제정안 본문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 3. _____ ---- 4. _____ _____ 5. _____ ----- _____ 6. _____ ----- <p>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p> <p>① 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와 제5조 제6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② _____ _____</p>

제 정 안	수 정 안
<p>사항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②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복지후생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다른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무료로</u>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p> <p>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공무원 4명 이내, 시의원 2명 이내, 그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과장이 된다.</p> <p>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p>	<p>-----을-----가 심의한다.</p> <p>③-----</p> <p>-----복지시설-----</p> <p>-----시장이 정한-----</p> <p>-----규칙에 따라-----.</p> <p>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정안과 같음)</p> <p>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행한다.</p> <p>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u>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와 명예의 전달</u> 등 기탁자에 대한 예우 여부 및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p> <p>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p>	<p>제9조(회의) ① (제정안과 같음)</p> <p>② _____ <u>접수여부와 명예의</u> _____</p> <p>③ ~ ⑤ (제정안과 같음)</p> <p>제10조(의견청취 등) (제정안과 같음)</p> <p>제11조(수당 등)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p>
<p>부 칙</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2014년 1월 1</u>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삭제></p>
<p>제20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8. 서울특별시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자</p> <p>②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10. 서울특별시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자</p> <p>③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9. 서울특별시 기부증서를 발급 받은 자</p>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각 법률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 대해 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건물 및 공간명칭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① 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와 제5조제6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상징물 설치의 장소 및 규모, 종류, 기간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기부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③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 4명 이내, 시의원 2명 이내, 그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여부와 명예의 전당 등 기탁자에 대한 예우 여부 및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